

# EU의 중소기업의 육성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법제

## I. 서론

## II. EU법 상 중소기업의 보호

1. 중소기업의 정의
2. 유럽중소기업법의 제정과 이행
3. 국가보조금에 관한 일괄면제규칙

## III. EU법 상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1. 지식재산권의 보호
2.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의 보호

## IV. 결론

이 주 윤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특집 ]

2012년도 Global Legal Issue는 최근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생발전'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주제별로 다룰 계획입니다. '공생발전'은 '자본의 책임'과 '상생번영'이 중시되는 시장경제모델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 [ 연재순서 ]

- 고용관계에서의 평등확립을 위한 법제
- 노인복지 관련법제
-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제
-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 일본, 유럽연합

## I. 서론

법의 지배와 경제적 통합이라는 가치를 기초로 하여 설립된 EU는 일차적 연원인 설립조약과 이차적 연원인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및 결정(Decision) 등과 같은 EU기관의 입법행위를 통해 EU법을 형성하여 왔다. 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EU가 쌓아 온 기존의 EU법 전체를 수락하고 준수하기로 약속하여야 한다. 또한, EU법은 27개 회원국(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2013년 7월 1일자로 28개가 될 예정임)의 국내법(여기에는 최상위의 헌법으로부터 주정부의 법률까지 모두 포함됨)보다 우선한다는, 소위 EU법 우위의 원칙의 확립으로 EU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한 검토에 앞서 반드시 EU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EU에는 약 2천 3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이 EU기업의 약 99%를 차지하는데, EU중소기업은 경제성장, 혁신, 고용 및 사회통합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럽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영업환경을 개선하며, 글로벌 경제에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을 업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sup>1)</sup>

본고에서는 EU법 상 이러한 중소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관한 일반 법제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를 검토하여 EU회원국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다.

## II. EU법 상 중소기업의 보호

### 1. 중소기업의 정의

유럽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한 공동체와 각 회원국 차원에서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관되고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를 채택하였다. 관련 권고는 1996년에 처음으로 채택되었으며,<sup>2)</sup> 이후 2003년 5월에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권고가 채택되었고, 동 권고

1)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index\\_en.htm](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index_en.htm) 참조.

2) Commission Recommendation 96/280/EC of 3 April 1996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는 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sup>3)</sup> 동 권고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합치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왜곡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투자기금(EIF) 역시 동 권고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4)</sup> 한편, EU 법 상 권고는 규칙, 지침 또는 결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의 수용은 각 회원국에서 결정할 수 있다.

위 집행위원회 권고 2003/361에 규정된 EU법 상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의 정의는 다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 i) 종업원의 수
- ii)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Company category (회사 분류)	Employees (종업원 수)	Turnover (매출액)	or	Balance sheet total (자산총액)
Medium-sized (중기업)	< 250	≤ € 50 m (in 1996 € 40 million)		≤ € 43 m (in 1996 € 27 million)
Small (소기업)	< 50	≤ € 10 m (in 1996 € 7 million)		≤ € 10 m (in 1996 € 5 million)
Micro (초소기업)	< 10	≤ € 2 m (previously not defined)		≤ € 2 m (previously not defined)

출처: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facts-figures-analysis/sme-definition/index\\_en.htm](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facts-figures-analysis/sme-definition/index_en.htm)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EU법 상 중기업은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며, 매출액이 5천만 유로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4천 3백만 유로 이하인 경우로 정의된다. 소기업은 종업원이 50명 미만이며, 매출액이 1천만 유로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1천만 유로 이하인 경우로 정의된다. 또한 종업원이 10명 미만이며, 매출액이 2백만 유로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2백만 유로 이하인 경우 초소기업에 해당된다.<sup>5)</sup>

위 표에 규정된 숫자(상한선)는 오직 개별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서 ‘기업’이란 법적 형태와는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하한 실체를 의미하며, 특히 수공업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및 가족사업과 경제활동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조합이나 협회도 포함된다.<sup>6)</sup>

3)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3/361/EC of 6 May 2003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제3조.

4) 위 권고 서문 제1단과 제1조 제2항.

5) 위 권고 부속서 제2조.

6) 위 권고 부속서 제1조.

이 권고에 의하면, ‘종업원’이란 전일제(full-time)나 시간제(part-time)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s)뿐만 아니라, 소유경영자(owner-managers)와 기업에서 정기적 활동에 종사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얻는 조합원도 포함된다.<sup>7)</sup> 또한, ‘매출액’이란 부가가치세나 다른 간접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sup>8)</sup>

EU법 상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한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업은 자신을 특별히 목표로 삼은 EU 사업지원 프로그램, 예컨대 연구기금, 경쟁력 및 혁신기금 및 국가보조금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며, EU의 행정 처리와 관련해 완화된 요건하의 절감된 비용 혜택을 받게 된다.

## 2. 유럽중소기업법의 제정과 이행

EU의 최대 당면과제 중 하나는 지식기반 경제로 순조롭게 전환하는 것인데,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및 혁신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에 따라 미래의 번영이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에 2008년 6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사회, 유럽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대한 통보, 소위 유럽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sup>9)</sup>을 채택하였다.<sup>10)</sup> 유럽중소기업법은 2010년까지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만든다는 리스본 어젠다의 ‘성장 및 일자리 전략(Growth and Jobs Strategy)’의 핵심 사항으로서, 역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세계화와 기후변화 대비에 필요한 재정 및 인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유럽중소기업법상 공동체 및 회원국 차원에서 관련 정책의 구상과 이행을 규율하는 10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sup>11)</sup>

7) 앞 권고 부속서 제5조.

8) 위 권고 부속서 제4조 제1항.

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f 25 June 2008 entitled “Think Small First” –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COM (2008) 394 final.

10) EU이사회가 2008년 12월 1일자로 유럽중소기업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회원국들은 동법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11) 유럽중소기업법, para. 3.

1. 기업과 가족기업이 번창할 수 있고 기업가정신이 보상받는 환경 창출
2.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가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2의 기회 제공
3.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원칙에 따른 법률 제정
4.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구현
5. 중소기업의 필요에 맞는 공공정책 틀의 개조
6. 중소기업의 재정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거래대금의 시의적절한 지불을 지원하는 법률 및 사업 환경 개발
7. 단일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8.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과 혁신 증진
9. 중소기업이 환경문제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0. 중소기업이 시장 증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무 및 지원

이러한 10가지 원칙은 EU차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창설하며, EU 전체의 법률 및 행정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중소기업법은 ‘법(Act)’이라는 상징적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EU경제에서 중소기업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EU 및 회원국 전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틀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sup>12)</sup>

특히 2000년의 ‘유럽중소기업헌장(European Charter for Small Enterprises)’<sup>13)</sup>과 2005년의 ‘현대 중소기업 정책(Modern SME policy)’<sup>14)</sup>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럽중소기업법은 기존의 기업정책규범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구조를 창설하며, 이러한 야심에 찬 정책 이행을 위해 보충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 EU와 회원국 간의 진정한 정치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다.<sup>15)</sup>

이후, 집행위원회는 2011년 2월 23일 중소기업법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소기업법 검토보고서<sup>16)</sup>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12) 유럽중소기업법, para. 3.

13) Annex III to the Conclusions of the Presidency of the Santa Maria Da Feira European Council of 19 and 20 June 2000.

1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f 10 November 2005, entitled “Implementing the Community Lisbon programme - Modern SME policy for growth and employment”, COM (2005) 551 final.

15) 유럽중소기업법, para. 3.

1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008년부터 2010년까지 EU와 회원국은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의 활성화 및 시장접근 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법에 규정되었던 대부분의 정책들이 발의되었지만,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부정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초소기업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등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2011년 11월 23일 EU가 중소기업, 특히 초소기업의 필요에 보다 잘 반응하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즉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과 관련된 보고서<sup>17)</sup>를 채택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집행위원회는 EU법의 적용으로부터 초소기업을 가능한 한 면제시키려고 노력하거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 3. 국가보조금에 관한 일괄면제규칙

유럽집행위원회는 2001년 1월 12일 舊EC조약 제87조와 제88조(現EU기능조약 제107조와 제108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적용에 관한 규칙, 소위 국가보조금에 관한 일괄면제규칙<sup>18)</sup>을 채택하였다. 동 규칙에 의하면, 투자와 관련한 ‘총 보조금 강도(gross aid intensity)’, 즉 적격비용(tangible costs)을 퍼센티지로 나타낸 국가보조금 액수를 소기업의 경우 15%, 중기업의 경우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sup>19)</sup>

이후 집행위원회는 2004년 2월 25일 기존의 국가보조금에 관한 일괄면제규칙에 연구 및 개발 보조금을 포함시키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칙<sup>20)</sup>을 채택하였다.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구조적 단점 중의 하나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있어 해당 보조금은 특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17)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Minimizing regulatory burden for SMEs Adapting EU regulation to the needs of micro-enterprises.

1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0/2001 of 12 January 2001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7 and 88 of the EC Treaty to State ai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19) 규칙 제2조와 제4조 제2항.

20)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64/2004 of 25 February 2004 amending Regulation (EC) No 70/2001 as regards the extension of its scope to include ai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 III. EU법 상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 1.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유럽중소기업에게 필수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조성과 혁신력은 위조, 저작권 침해 및 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이러한 위조상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모범관행 프로젝트의 전문가그룹이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업(Making IPR work for SMEs)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기업과 정부가 보다 나은 지원조치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돕는 데 일조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은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혁신을 저해하거나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중소기업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함께 집행에 있어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2.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의 보호

##### 1)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Trade Secrets)<sup>21)</sup>은 기술, 비즈니스나 마케팅 전략, 데이터 축적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EU법에서는 영업비밀 대신, 노하우(Know-ho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직적 합의와 공동행위에 관한 규칙<sup>22)</sup>에서 노하우에 관한 정의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동 규칙 제1조에 의하면, 노하우란 공급자의 경험과 분석으로부터 나오는 은밀하고도 실질적이며 확인 가능하지

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2)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790/1999 of 22 December 1999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vertical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

만 특허를 받지 않은 실용적 정보를 의미한다.<sup>23)</sup>

## 2) 영업비밀에 관한 법제

영업비밀은 시간과 자본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EU차원의 법적 고려가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았다. 사실 영업비밀은 불공정한 경쟁금지, 불법행위법(tort law), 계약법, 노동법 및 형사법 등을 통해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한편, EU회원국은 영업비밀에 관해 별개의 법체계를 갖고 있으며, 보호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EU회원국 중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스웨덴은 영업비밀에 관한 특별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제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벨기에, 키프로스,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루마니아 및 프랑스 등은 영업비밀에 대해 특별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sup>24)</sup> 따라서 EU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경쟁업체나 영업비밀을 노리는 스파이들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각 회원국에 따라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에 놓이게 된다.

현재 EU법 상 일관되게 집행가능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비밀은 국내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 경우에만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한 지침<sup>25)</sup>의 적용 대상이 된다. 동 지침에 의해 규정된 조치는 공동체 법이나 관련 회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적용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실체법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비록 EU법 상 일관된 영업비밀의 보호기준이 없긴 하지만, 영업비밀이 부적절

23) (f) "know-how" means a package of non-patented practical information, resulting from experience and testing by the supplier, which is secret, substantial and identified: in this context, "secret" means that the know-how,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is not generally known or easily accessible; "substantial" means that the know-how includes information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 buyer for the use, sale or resale of the contract goods or services; "identified" means that the know-how must be described in a sufficiently comprehensive manner so as to make it possible to verify that it fulfils the criteria of secrecy and substantiality.

24) EU집행위원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역), 유럽 지식재산권 단일시장-경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일류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한 창의성 및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2011, 17쪽.

25)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하게 획득되고 유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려는 법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용계약 안에 비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s, non-disclosure agreements)을 포함시켜 경쟁업체를 위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이다. 또한,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기적 보안 검사, CCTV를 이용한 감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컴퓨터 자체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쟁활동 금지계약(Non-compete agreements)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사업파트너와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계약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악용하는 경우, 일단 계약에 규정된 벌금을 지불토록 하거나 EU회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영업비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sup>26)</sup>

### 3)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에 노출되어 특히 그 위협에 취약한 것이 사실인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에 관해 충분한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항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향후 유럽의 경쟁력과 취업 창출의 기반이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영업비밀 관리계획을 개발하고 산업스파이나 비밀 유출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sup>27)</sup>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EU법은 아직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TRIPs나 기타 국제조약이 이에 관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해 줄 뿐으로, 각 회원국들이 해당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역시 이러한 잠재적 차이에 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sup>28)</sup>

기술의 획득이나 상업적 이전에 관한 합법적 방법으로서의 라이선스계약(Licence agreement)은 회사와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통해 보다 용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26) EU-China IPR2, Roadmap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Europe: Trade Secrets Protection in Europe, 2011, pp. 7-9.

27) *Ibid.*, p. 2.

28) *Ibid.*, p. 3.

자신의 연구와 개발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라이선스계약에 독점금지에 관한 측면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현재 EU는 기술 라이선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격한 독점금지법을 구비하고 있다. 예컨대,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집행위원회규칙<sup>29)</sup>과 기술이전계약에 관한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sup>30)</sup>이 그것이다.<sup>31)</sup>

한편, 중소기업은 회원국마다 다양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 라이선스계약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차이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sup>32)</sup>

또한, 라이선스계약은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rrangement)의 형태로 통합될 수 있는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중소기업은 소유권 및 비밀정보의 보호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하여야 한다. 합작투자계약이 중소기업에게는 내부적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중요한 기회로 고려될 수 있다.<sup>33)</sup>

#### IV. 결론

EU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 전략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육성 및 보호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EU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EU는 중소기업법의 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각 회원국 국내법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의 완화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경쟁법을 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역시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EU차원의 통일된 법제를 마련하

29) 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2/2004 of 7 April 2004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30) Commission Notice -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31) 한편, 기술이전계약규칙의 경쟁법 규정들이 2014년 4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럽집행위원회는 2011년 12월 6일부터 2012년 2월 3일까지 관련 경쟁법 규정의 개정을 위해 시민, 공공당국, 기업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2) EU-China IPR2, *supra* note 26, p. 10.

33) *Ibid.*, p. 11.

고 있지 못하고, 몇몇 관련 규정을 통해 해당 부분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조화를 위한 법적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안정된 형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EU의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법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